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4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열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다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서울 광진구 소재 C호텔 구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9. 4. 8. 18:31경 원고 농협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우리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4. 8. 고객인 중국 국적의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고, 18:31경 "E" 명의로 7,000만 원이 입금되자 표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국내송금 지급권을 발급하였다.

라. E은 18: 42경 위 지급권을 칩으로 교환하여 23: 21경까지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퇴장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7,000만 원이 송 금되어 버렸는바, 피고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 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출 금할 수 없는 야간에 다액을 송금받고 이 돈을 E에게 칩으로 제공한 후 21분 만에 현 금 6,700만 원을 교환해주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 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760조 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E에게 위 금액 상당 국내송금 지급권을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회사와 고객 사이의 카지노 게임 칩 교환약정에 따라 그 대가를 선지급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E"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위 돈이 편취된 돈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을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지노 게임 칩 교환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칩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보이 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형철